

혐오 범죄 및 시민권

팩트 시트

DFEH



랄프 시민권령(Ralph Civil Rights Act)은 사람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젠더, 임신, 출산 및 관련 질병, 성 정체성 및 젠더 표현, 인종, 피부색, 종교, 선조, 국적, 장애, 질병,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모국어, 이민 상태, 정치적 소속, 노동 쟁의 상태를 이유로 한 폭력 행위 또는 폭력 위협을 금지합니다(캘리포니아주 민법 section 51.7). 위에 나열된 특성은 그저 예시일 뿐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른 차별에 대한 근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서 금지된 행동은 범죄 행위로 처리되어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랄프 시민권령은 개인이 불만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검찰총장, 공정 고용 주택국(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검사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알릴 권리를 포함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계약의 조건으로 해당 시민권령의 보호를 포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FEH가 하는 일

캘리포니아 민법은 혐오 폭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 고용 주택국은 이와 관련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불만 제기 사항 대한 조사
2. 위법 행위의 기소
3.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혐오 폭력, 인신매매, 괴롭힘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세미나 및 회의에 참여하여 강연을 제공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법은 구두 및 서면 위협, 신체적 폭력, 폭력 시도, 낙서, 부지 파손 또는 재산 피해를 금지합니다. 기타 캘리포니아 법은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과 예배 장소 또는 종교 교육 기관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의 파손, 폭력에 대한 협박으로 종교 활동을 꺾으려는 시도, 소유자 또는 점유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또는 기타 보호의 근거 때문에 부지를 표적으로 삼아 폭탄이나 방화로 사람들이 예배 장소 또는 사유 부지에서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합니다.

이러한 법은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러한 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조상, 국적, 연령,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소속, 노동 쟁의 상태로 인해 폭력 또는 폭력 위협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에게 민사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이용 가능한 민사 구제:

1. 접근 금지 명령
2. 현실적 손해 배상
3. 징벌적 손해 배상
4. 민사 처벌
5. 변호사 비용

몇 가지 단계를 통해 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혐오 범죄 예시

캘리포니아 시민권령에 따라 다음은 불법입니다.

- 보호되는 그룹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된다는 이유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제로 방해하거나 완력을 쓰는 행위.
- 자신의 종교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협박 또는 폭력으로 종료 활동을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보호되는 그룹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된다는 이유로 개인 부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되는 그룹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된다는 이유로 예배 장소 또는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
- 보호되는 그룹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된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행위.
- 보호되는 그룹에 실제로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한 소불법 폭력을 주창하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불법 행위를 선동 또는 발생시켜 실제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제가 혐오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 브로슈어를 사용하십시오. 변호사, 경찰, 정부 기관에 문제에 대해 연락할 때, 이 브로슈어를 보여주십시오.
2. 모든 폭력 협박 및 행위를 경찰에 알리십시오. 폭력 협박 또는 행위와 특성(인종, 성별,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이 관련성은 개인의 특성 또는 나와 관련이 있는 그룹 또는 개인의 특성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3.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FEH, 법원이나 지역 경찰서, 지방 검사, California Attorney General 등과 같은 기타 정부 기관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캘리포니아주 민법 section 52에 따라 랠프 또는 베인 시민권령(Bane Civil Rights Acts)을 집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구제

1. **접근 금지 명령:**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후, 위반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 손해 배상:** 의료비, 손실 임금, 기물 수리 비용 및 정신적 괴로움과 고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징벌적 손해 배상:** 법원에서는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민사 처벌:** 법원은 \$25,000의 벌금을 부과하여 사건 신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비용:** 법원은 이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호 계층에 대한 혐오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 사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DFEH 불만 사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게 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반드시 피해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부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공정 고용 주택국
 dfeh.ca.gov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